

연도별 육가공 관련품목 무역제도

품목년도	1994	1995	1996	1997	1998	1989	2000	2001
퀘 타 (SBS比) 쇠고기 관세 기금상한 0201, 2 - xx - 0000	106천톤 (20%) 20% 95%	123 (30) 43.6 70	147 (40) 43.2 60	167 (50) 42.8 40	187 (60) 42.4 20	206 (70) 42.0 10	225 (70) 41.6 0	자유화 41.2
쇠고기육포 0210-20-0000				7월-30% 양허 - 35.8				
식용설육 0206-10-0000, 0206-29-0000				20% 양허 - 18				
돼지고기 0203-2x -	퀘 타 양허관세	17,544 25%	23,392 25%	6월 14,620 25-33.4	자유화 32.3	31.2	30.2	'2004년 25%
닭고기 0207-2, 4-	퀘 타 양허관세	7,700 20%	10,400 20	6월 6,500 20-30.5	29.3	28.1	→ '2004년 20%로	
돼지고기햄 0210-1* -	양허관세 35.8 →		기본관세 7월 30% →					
베이컨 0210-15-	기본관세 30% → 양허관세 35.8 →							
돼지고기캔 1602-4*	30% →			7월 60% 기본세 → 27 양허 →				
쇠고기캔 1602-50-	30% →			7월 80% 기본세 → 72% 양허세 →				

축산물 시장접근 내용

구 분	관세양허(%)		시장접근 약속물량(톤, %)		
	기준세율	양허세율	초기년도	최종년도	이행기간
쇠고기	44.5	40	123,000(43.6)	225,000(41.6)	1995~2000
돼지고기(냉동)	37	25	21,930(25)	18,275(25)	1995~1997.6
닭고기	35	20	7,700(20)	6,500(20)	1995~1997.6